

# 5. 下都給去來公正化에 관한 法律中 改正法律(案)立法豫告

公定去來委員會 公告 1996-5號 1996. 8. 7

## 주요골자

### 가. 제도신설 및 폐지

#### 1) 건설하도급대금보증제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제 도입

-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대부분 일반건설업체)는 수급사업자(대부분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법적인 근거는 없음), 수급사업자의 경우 원사업자의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下에서 부도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행 보증제도 아울러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궁극적으로 보호

#### 2) 하도급자문위원회제도 도입

- 하도급법의 경우 제조, 건설, 설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에 발생하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하도급자문 위원제도를 도입

#### 3) 과징금제도 도입

- 하도급법 위반시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요청, 형벌등이 있는 바, 법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제재를 하기 위하여 과징금 제도를 도입

#### 4) 일부 형벌조항의 삭제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일률적인 형벌부과조항은 법의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다

고 판단되므로 시정조치 불이행죄, 허위감정죄 이외의 형별조항은 삭제하고 삭제된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

#### 나. 제도개선

- 1) 중소기업간 하도급시 원사업자 제외요건 합리화
  - 상시종업원수의 경우 사업자의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 제외요건을 단일화
- 2) 제조위탁의 경우 지역별 차등적용 근거 마련
  - 하도급법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수급사업자가 없도록 일부 지역의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 법운용상 미비점 보완

- 1)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2) 부당감액등의 경우에도 자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3) 당사자간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대금지급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4)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준공금·기성금 지급규정 적용
- 5) 법 위반행위 신고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개정 취지

1985년 4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1996년 3월 하도급국 신설이후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하도급거래관행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므로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다양화, 법집행상 전문성 확보, 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